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434 발의연월일: 2024. 11.11.

발 의 자:정성호·복기왕·박성준

이강일 · 황정아 · 문진석

소병훈 · 김병기 · 채현일

김성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제도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버스운송사업 및 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면서, 천연가스 버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전기버스 또는 수소전기버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전부를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취득세가 전부 면제되는 전기버스 또는 수소전기버스와 달리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의 감면율만 적용되어 친환경 택시로의 전환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친환경 택시의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수 소전기자동차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 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면제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70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 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
면) ① ~ ④ (생 략)	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
	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
	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
	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
	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
	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
	득세를 면제한다.